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뉴욕시 교육청이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공정심의명령을 득한 분은 제안된 집단 소송 합의안에 따라 지급금 및/또는 교육 서비스를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00년 12월 13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까지, 뉴욕시 공정심의명령을 득한 분들은, 뉴욕시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 **DOE**)이 제 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시된 본 합의안에 따라 (i) 공정심의명령이 명하는 지급금, (ii) 뉴욕시교육청이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교육비의 환급 (iii) 및/또는 (iii) 최대 \$8,000 (또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15,000)의 교육 서비스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본 합의에 따라 귀하께서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지급금, 바우처나 환급금을 결정하는 절차는 소송합의약정 및 동의서 (Stipulation and Agreement of Settlemen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
- 제시된 합의안은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의 결여, 그리고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명령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DOE가 공정심의담당관이 명령한 조치를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소송을 타결하기 위함입니다.
- 제시된 합의안의 목표는 (1) 법률 소송이 지속되는 위험을 피하고, (2) 장애 자녀 (또는 귀하가 21세 이상이며, 귀하를 대리하여 부모가 공정심의명령을 받은 경우의 귀하 본인)의 교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3) 향후, DOE로 하여금 공정심의명령을 충실히 제 때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 공지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합의안에 따른 귀하의 법적 권리와 선택

귀하의 권리:

1. **명령에 따른 교육 서비스 사용 바우처, 교육 서비스 비용 환급 및/또는 지급금 요청권** –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한 건 이상의 공정심의명령을 득하고, 본 공지문에 포함된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탈퇴 선택권** – 본 공지문에 동봉된 “탈퇴서” 즉 바우처, 환급금, 또는 지급금 수령 거부서를 제출하십시오.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 날짜로 된 공정심의명령(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정심의명령의 체계적 이행에 관해 제시된 합의 부분에서 탈퇴할 수는 없지만, 본 공지문에 대해 귀하가 취할 대응책과 상관없이 향후 명령에 대한 개별적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거부권**– 제시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4. **심의회 출석권**– 제시된 합의안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요청하십시오.
- 귀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 서비스 바우처나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 날짜의 공정심의명령에 대한 개별적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 이러한 권리와 옵션 – 및 권리 행사 기한 – 은 본 공지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관할 법원은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시된 합의안을 법원에서 승인할 경우, 본 공지문에 상세히 명시된 절차를 거쳐 바우처와 지급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제시된 합의안에 따라 접수된 보상청구서 처리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기본 정보

1. 본 법률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2003 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DOE 가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의 결여, 그리고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명령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지 못한 결과, 공정심의 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본 집단 소송을 개시하였습니다. 2003 년 12 월 13 일 제출한 소장에서 대표 원고는, DOE, 교육 위원회, 그리고 개인 및 공인 자격으로서의 조엘 클라인 교육감 (이하 모두 “피고”라 명명함)이 공정심의 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제 14 차 미연방 수정 헌법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의 정당한 절차 조항, 장애인 교육법, 20 U.S.C. §§ 1400 이하 참조, 42 U.S.C. § 1983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 1400 et seq., 42 U.S.C. § 1983), 장애인 재활법 제 504 조, 29 U.S.C. § 794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29 U.S.C. § 794), 그리고 뉴욕주 교육법 §§ 4401 이하 참조 (New York State Education Law, §§ 4401 et seq.),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든 책임, 과실이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 집단 소송이란?

집단 소송이란 “집단 대표 (Class Representative)”라고 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 관계를 지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집단 대표 및 공통의 이해 관계를 지닌 모든 사람을 “집단 구성원 (Class Members)” 또는 “집단 (Class)”이라고 합니다. 집단에서 정식으로 탈퇴한 집단 구성원을 제외하고, 한 곳의 법원에서 모든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본 집단 소송의 담당 판사는 Richard Holwell 연방지방법원 판사입니다. 2005 년 9 월 15 일, 법원은 유리한 공정심의 명령을 득했거나 앞으로 득할 예정이고 그러한 명령이 제 때에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처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인정했습니다.

3. 합의안이 제시된 이유는?

법원은 대표 원고나 피고, 양측 어느 쪽에도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양측이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합의안이 제시되어 양측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서로 합의함으로써 소송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좀더 신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대표와 그들의 변호사는 제시된 합의안이 모든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합의안에 따른 지급금 및/또는 교육 서비스의 수령자는?

귀하에게 본 합의에 따른 지급금 및/또는 교육 서비스 바우처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이 집단 구성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4. 제시된 합의안의 적용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송 당사자 양측은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 23(b)(2) 및 23(b)(3) (Rules 23(b)(2) and 23(b)(3)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Richard Holwell 판사에게 약정 (Stipulation)에 명시되어 있는 제시된 합의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혹은 모두에 해당되는 분은 모두 집단 구성원입니다:

- I. 2000 년 12 월 13 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8 년 1 월 31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뉴욕시교육청을 상대로 공정심의담당관으로부터 유리한 명령을 득했거나 뉴욕시교육청이 참석한 공정심의회의 심의록에 기록된 합의약정을 득했으나 그러한 명령이나 합의가 제 때에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던 상황에 처했던 모든 분 (“보상적 구제 하위 집단 (Compensatory Relief Subclass)”).
- II. 2003 년 12 월 12 일이나 그 이후 (1) 뉴욕시교육청을 상대로 공정 심의 담당관으로부터의 유리한 명령을, 또는 DOE 가 참석한 공정 심의회의 심의록에 기록된 합의 약정을 득했거나 득하고 (2) 그러한 명령이나 합의가 제 때에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모든 분 (“명령적 구제 하위집단 (Injunctive Relief Subclass)”).

5. 아직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아직 귀하의 적격 여부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1-800-918-8061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을 방문하십시오. 또는 아동 권익 옹호 협회 (Advocates for Children), 1-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시된 합의안 – 합의 조건

6. 제시된 합의안의 조건 내역은?

집단 구성원의 집단 소송 취하 대가로, 피고측은 제시된 합의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조건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명령적 구제 하위집단에게 제공되는 구제책

효력 개시일부터, 독립감사관이 DOE가 제 때에 충실히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OE의 컴퓨터 기록과 학생 파일을 조사하고 DOE 직원과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효력 개시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 DOE는 반드시 공정심의명령이나 이 명령에 포함된 의무 사항의 75%를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DOE가 이 기준을 충족시킨 후 6개월간, DOE는 반드시 공정심의명령이나 이 명령에 포함된 의무 사항의 85%를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2년간 DOE는 반드시 공정심의명령이나 이 명령에 포함된 의무 사항의 91.5%를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DOE가 이러한 규정 이행에 성공한 후에는, 본 합의로 인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DOE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 계획 (Corrective Action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 조치 계획을 따른 후에도 DOE가 이러한 요건 충족에 실패하면, 그 때는 양측은 법원에 출두하여 적절한 행동 방침을 강구할 것입니다. 독립감사관이 공정심의명령이 제 때에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내리면, 집단 구성원들에게 독립감사관의 결정을 알리는 공지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비록 DOE가 사실상 공정심의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실행했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 공지문은 DOE가 공정심의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상적 구제 하위집단에게 제공되는 구제책

DOE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지시한 명령

바우처: 만약 DOE에게 학부모, 개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설 학원에 대한 비용 지급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집단 구성원이 2000년 12월 13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득했고 그 명령이 제 때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집단 구성원은 교육 서비스 바우처와 학습 지원 기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구성원은 \$8,000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 바우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심의명령에서 DOE로 하여금 한 개의 관련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라면, 집단 구성원은 \$4,000에 상당하는 교육 서비스 바우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DOE가 2004년 여름, 집단 구성원에게 관련 서비스 이용 초대권을 제공했을 경우, 집단 구성원이 이 초대권을 받지 못했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바우처는 \$4,000 또는 50%, 둘 중 액수가 더 적은 쪽으로 금액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공정심의명령 선고 후 60일 중에서 45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 서비스 바우처는 \$15,000에 상당할 것입니다. 학생이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로컬이나 리전트 졸업장을 받았을 경우, 집단 구성원에게는 바우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바우처를 요구할 경우, DOE는 집단 구성원의 공정심의명령이 제 때에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니면 DOE가 명령을 제 때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어도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DOE가 그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경우, 집단 구성원은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독립감사관이 DOE 주장에 동의하면 집단 구성원은 바우처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최대 \$2,000까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바우처는 공정심의명령에 명시된 아동을 위해 교육 서비스 용도로 사전 승인된 시설 또는 집단 구성원이 요청하고 독립감사관이 승인한 제공자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바우처마다 최대 \$3,000까지 노트북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독서기와 같은 학습 지원 기술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적용 대상 학생에게 \$3,000을 초과하는 학습 지원 기술이 필요함을 집단 구성원이 독립감사관에게 입증하는 경우 제외)

비용 환급: DOE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지시한 명령을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31일 사이에 득한 집단 구성원은 바우처대신 DOE가 공정 심의 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로 지출한 교육 서비스 비용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집단 구성원은 이 공지문에 첨부된 보상청구서의 설명에 따라, 교육 서비스 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DOE 에게 학부모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을 지시한 명령

다음에 명시된 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추가 서류 안내는 보상청구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집단 구성원에게 비용을 환급해주도록 DOE 에게 지시한 공정심의명령이 2000 년 12 월 13 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8 년 1 월 31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내려졌으며 DOE 가 그때까지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집단 구성원은 DOE 에게 명령받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0 년 12 월 13 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8 년 1 월 31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명령이 내려진 후 DOE 가 특정 서비스 비용 지급을 명령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집단 구성원은 DOE 에게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학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가 지불한 비용을 환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DOE 가 특정 서비스 비용 지급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았고 학생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집단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보상 유형은 해당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만약 그러한 명령이 2000 년 12 월 13 일이나 그 이후부터 2006 년 6 월 30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내려졌을 경우, 집단 구성원은 교육 서비스 바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의 “바우처” 항목에서 명시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 만약 명령이 2006 년 7 월 1 일 이나 그 이후부터 2007 년 6 월 30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내려진 경우, 집단 구성원은 (i) 명령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거나 (이 경우, 비용은 집단 구성원이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를 제출하면 DOE 가 일시불로 완납할 것임) 아니면 (ii) 교육 서비스 바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바우처를 선택할 경우, 위의 “바우처” 항목에서 명시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 만약 명령이 2007 년 7 월 1 일 이나 그 이후부터 2008 년 1 월 31 일이나 그 이전 사이에 내려진 경우, 집단 구성원은 명령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집단 구성원이 본 공지문에 첨부된 보상청구서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DOE 가 전액 부담합니다.

7. DOE 가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바우처, 지급금 및/또는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금의 수령 방법은?

반드시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2008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금 및/또는 바우처를 수령하려면, 반드시 보상청구서 증빙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 증빙양식은 본 공지문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서 증빙양식은 인터넷,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에서도 제공됩니다.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서명 후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2008 년 6 월 30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8. 지급금 및/또는 바우처의 지급 시기는?

제시된 합의안 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짓기 위해 2008 년 4 월 10 일 심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 (Settlement Fairness Hearing)”). 만약,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 이후, Holwell 판사가 제시된 합의안을 승인하더라도, 항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시된 합의안이 최종적인 것일 경우, DOE 가 귀하의 보상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우처와 지급금은 제출하신 보상청구서와 입증 서류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 또는 효력 개시일로부터 60 일 이내, 둘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짜에 발송될 것입니다. 만약 DOE 가 보상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청구서에 찍힌 우체국 소인 날짜로부터 3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DOE 의 이의 제기에 대해 60 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독립감사관이 DOE 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귀하께 지급금이나 바우처 수령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면, 독립감사관의 판정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바우처나 지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9. 지급금 및/또는 바우처를 수령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시된 합의안이 공정성 심의회에서 승인된 경우, 귀하는 DOE 가 체계적으로 공정심의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DOE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계속하거나 그 외 모든 법률 소송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법원의 모든 명령이 귀하께 적용되며 합법적인 구속력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공정심의명령을 제 때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DOE의 향후 시스템에 관해 제시된 합의 조건은 보상적 구제 하위집단 (Compensatory Relief Subclass) 및 명령적 구제 하위집단 (Injunctive Relief Subclass)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지닙니다. 명령적 구제 하위집단 구성원들은 2008년 2월 1일이나 그 이후 내려지는 개별적인 공정심의명령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제시된 합의안에 포함된 권리 포기:

“타결된 청구권 (Settled Claims)”이란 연방, 주, 지역, 법령, 또는 보통법이나 그외 모든 법,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발생한 것이든 미발생한 것이든, 청산된 것이든 미청산된 것이든, 법률에 근거하든, 형평상에 근거하든, 만기가 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본질상 집단이건 개인이건, (i) 본 소송건에서 대표 원고, 집단 구성원 또는 이들 중 누구든지에 의해 면책 모두를 상대로 주장되었거나 (ii) 고소장과 관련되었고 고소장에 명시되었으며 고소장에서 인용된 주장, 거래, 사실, 문제 혹은 사건, 주장이나 부작위에서 파생되거나 이와 관련있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어떤 포럼에서든지 대표 원고, 집단 구성원, 또는 이들 중 누구든지에 의해 면책 상대방 모두를 상대로 주장될 수도 있었던 모든 보상 청구, 채무, 요구, 권리 또는 소송 사유나 배상 책임 일체 (모든 피해, 이자, 변호사 비용, 전문가나 컨설팅 비용, 그 외 기타 비용, 지출 또는 배상 등 무엇이든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의미합니다. 타결된 청구권에는 (i) 제시된 합의안이나 그에 속한 조항의 집행 요구, (ii) 보상적 구제 하위집단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보상 청구권 또는 (iii) 2008년 2월 1일이나 그 이후 내려진 명령에 관한 명령적 구제 하위집단 구성원의 개별적 보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10. 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귀하가 집단 구성원일 경우, 뉴욕 아동 권익 옹호 협회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소속 변호사와 Milbank, Tweed, Hadley and McCloy, LLP 법률회사의 소속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합니다. 이 변호사들을 집단 소송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들 변호사 수입료는 귀하께 청구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11. 변호사 수입료 지급 방식은?

약정에 따라 DOE는 사실 관계 조사, 소송 진행, 제시된 합의안 교섭, 그리고 제시된 합의안 만기 때까지 피고인 행동 관찰 명목으로 집단 소송 변호사에게 타당한 수준의 변호사 수입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지불은 어떤 식으로든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시된 합의안의 거부

귀하는 제시된 합의안 또는 합의안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표명할 수 있습니다.

12. 제시된 합의안에 대해 법원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려면?

집단 구성원의 경우, 제시된 합의안의 일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째서 법원이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의견을 참작할 것입니다. 거부하려면 반드시 *LV, et al. v. New York City Dept. ,et al.,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03 Civ. 9917 (RJH)*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제시된 합의안 거부 사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2008년 3월 2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The Clerk of the Cour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500 Pear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7**

**Shawn V. Morehead, Esq.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Inc.
151 West 30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1**

**Jeffrey S. Dantowitz, Esq.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Office of the Corporation Counsel
100 Church St.
New York, NY 10007-2601**

법원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

법원은 심의회를 열어 제시된 합의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13.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장소와 날짜는?

2008년 4월 10일 오전 10시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Daniel Patrick Moynihan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7, in Courtroom 14A에서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가 열립니다. 이 심의회에서 법원은 제시된 합의안의 공정성, 합리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Richard Holwell 판사가 심의회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람들의 발언을 경청할 것입니다. 심의회 이후, 법원은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4. 심의회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Holwell 판사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집단 소송 변호사가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비용 부담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논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 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자비로 귀하의 개인 변호사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15.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에서 발언하려면 법원에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 허락을 받으려면 반드시 *LV, et al. v. New York City Dept. of Educ., et al.*, No. 03 Civ. 9917 (RJH)에 출두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심의회에서 귀하의 증언 요청을 받게 될 증인,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자료를 꼭 포함시키십시오. 귀하의 표명서는 2008년 3월 21일 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다음 주소로 제출바랍니다:

The Clerk of the Cour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500 Pear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7

Shawn V. Morehead, Esq.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Inc.
151 West 30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1

Jeffrey S. Dantowitz, Esq.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Office of the Corporation Counsel
100 Church St.
New York, NY 10007-2601

16.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교육비 바우처나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했다라면 받았을 어떠한 바우처나 지급금도 일체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절대 다시, 이 건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DOE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시작할 수 없고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법률 소송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17.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본 공지문은 제시된 합의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약정을 참조하십시오. 본 공지문과 약정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약정 사본이 필요하시면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을 방문하십시오.